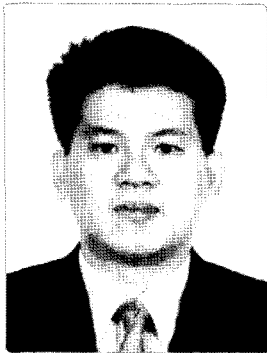


# 영국의 특허소송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교역국 중 하나인 영국의 특허소송 체계, 특허법원 및 소송절차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발명가와 기업이 영국 및 유럽에서의 특허 분쟁 관련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임 호 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서기관

## I. 서론

## II. 특허소송

## III. 영국의 특허소송

1. 영국의 사법 제도
2. 특허소송 전담 법원
3. 특허소송 체계
4. 특허 무효심판 및 무효 소송
5. 특허 불침해 선언 청구제도
6. 특허 침해소송
7. 영국의 지재권 소송 건수(통계)
8. 영국의 특허소송 대리인

## IV. 우리나라의 특허소송

## V. 결어

## I. 서론

스마트폰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 기술은 기술개발 사이클이 매우 짧아지면서 특허권의 경쟁력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연구개발 결과를 특허화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특허를 받게 되면 관련 기술이 공개되므로 1) 제3자가 특허기술을 일부 변형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특허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특허분쟁 대응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은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하는 때도 있다. 이때 특허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 및 처리절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한 국가에만 특허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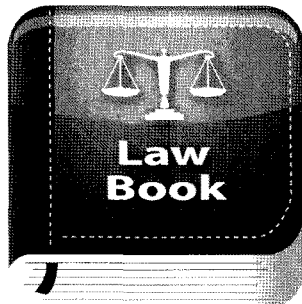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출원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분쟁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므로, 특허권자는 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 분쟁 제도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교역국 중 하나인 영국의 특허소송 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발명가와 기업이 영국 및 유럽에서의 특허 분쟁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특허소송

광의의 특허소송이란 특허권에 관한 분쟁 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체의 행정·민사 소송을 말한다. 용어만을 생각하면 특허소송보다는 지식재산소송이라고 부르는게 더 적합할 듯 하나, 실무적으로는 특허소송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도 특별히 권리별로 구분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소송 대신 특허소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한편, 특허소송의 종류는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① 발명자가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이 특허를 허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일종의

행정소송), ② 등록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소송, ③ 특허권자와 제3자가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다투면서 손해배상 또는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으로 구분된다. 기타 특허권의 라이선스 관련소송, 특허권의 기간 연장이나 정정에 관한 소송도 있다.



## III. 영국의 특허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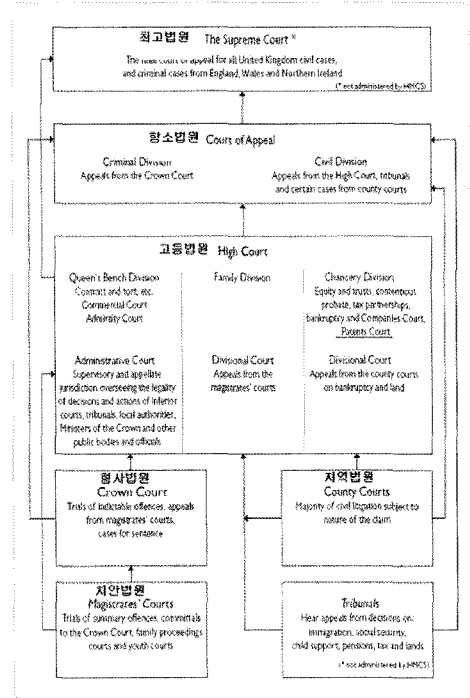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영국의 사법제도 및 특허소송 체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영국의 사법 제도

영국 법원은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 -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 고등법원(제1심, The High Court) - 기타 법원체계를 이루고 있다.<sup>2)</sup>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제1심 법원은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이다. 치안법원은 웨일즈와 잉글랜드 지역

에 약 3만개가 있으며, 사건은 3명의 판사에 의해 심리된다. 취급하는 사건의 약 95%는 치안법원 단계에서 종결된다.



(영국의 법원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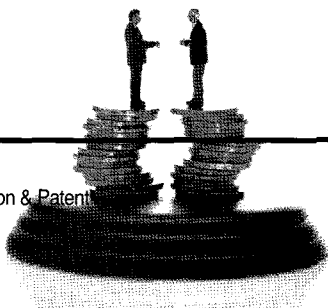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다른 법원은 형사법원(Crown Court)<sup>3)</sup>이다. 웨일즈와 잉글랜드 지역에 77개가 있으며 강도 등 중대범죄에 관한 소송, 그리

1) 각종 특허청은 특허를 부여한 발명에 대해 공고를 하는데, 이때 특허권자가 제출한 발명기술 명세서가 공개한다.  
2) "Senior Courts Act 1981" 제1조 : The Senior Courts  
(1) The [Senior Courts] of England and Wales shall consist of the Court of Appeal, the High Court of Justice and the Crown Court, each having such jurisdiction as is conferred on it by or under this or any other Act.  
3) "Senior Courts Act 1981" 제45조 : General jurisdiction of Crown Court

고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 결정에 대한 항소를 담당한다.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제1심 법원은 지역법원(County Court)이다. 21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사, 파산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사소송 제1심을 처리한다. 한편, 중요한 제1심 민사사건, 그리고 일부 민·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이 고등법원(High Court)이다. 이 법원은 런던에 위치하고 있고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 가사부(Family Division), 형 평 법 부 (Chancery Division)<sup>4)</sup>로 구성된다. 고등법원의 형평법부에는 특별법원으로 특허법원(Patent Court)<sup>5)</sup>이 있다.

중요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이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다. 항소법원은 형사부(Criminal Division)와 민사부(Civil Division)로 구성<sup>6)</sup>된다. 최고법원(The Supreme Court)은 2005년 개정 법률에 의해 설치<sup>7)</sup>되었다. 예전에는 상원(House of Lords)이 최종심을 담당하였다. 현재 최고법원에는 12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 2. 특허소송 전담 법원

특허소송은 법률체계상 민사법원인 지역법원(County Court)과 고등법원(High Court)이 제1심의 특허소송을 담당한다. 그런데 영국은 특허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각 전문법원을 두고 있다. 지역법원급으로는 특허지역법원(Patents Court, PCC)을 설치하였고, 지방법원급으로는 특허법원(Patent Court, PC)을 두고 있다. 한편, 이들 법원의 소송결과에 불복하면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및 최고법원(Supreme Court)에 차례로 항소할 수 있다.

### 가) 특허법원(PC)

특허법원은 『Senior Courts Act』 제6조 제1항에 근거하며, 1심 민사법원(High Court)의 형평법부(Chancery Division) 소속의 특별법원으로 1977년 설립되었다. 2011년 현재 8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 나) 특허지역법원(PCC)

특허지역법원은 1998년 『상표,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률(1998)』(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98) 제287조~제29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제 특허지역법원의 업무는 1990년부터 개시되었다. 위 법률 제287조 제1항에 의하면,

Lord Chancellor(헌정부 장관)는 지역법원(County Court)을 특허지역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초 시행 당시인 1990년에는 “Edmonton County Court”를 특허지역법원으로 지정하였다가 1994년 7월 1일부터는 “The Central London County Court”를 특허지역법원으로 대체하여 지정하고 있다.<sup>8)</sup> 그 밖에 현재까지 특허지역법원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법원은 없다. 위 법률 제287조 제2항은 특허지역법원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관할권을 갖도록 하였다. 한편, 위 법률 제287조 제1항은 특허지역법원이 특허 및 디자인 사건, 또는 특허·디자인에 부수적인 사건에 대해 특별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 다른 법률들의 개정을 통해 영국 등록상표(UK registered trade marks)<sup>9)</sup>, 유럽지역상표(Community Trade marks)<sup>10)</sup>에 대한 관할권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특허지역법원은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passing off)에 대한 보통관할권도 갖는다. 『상표,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률(1998)』(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98) 제2항에 의하면 특허지역법원이 특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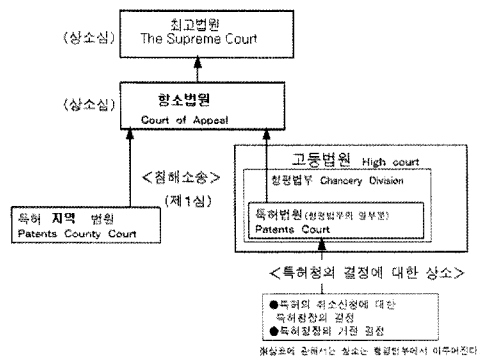
할권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사건가액 한도(Financial limits)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The Patents County Court (Financial Limits) Order 2011”에 의하면 소송 가액의 상한은 50 만파운드<sup>11)</sup>이다.

한편, 위 법률 제289조에 따라 특허지방법원 사건은 특허법원(patents court)에 이송되거나 이송받을 수 있고, 제292조에 의해 등록 특허변리사(Patent agent)도 변호사(Solicitor)와 같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 3. 영국의 특허소송 체계

영국의 지재권 소송 종류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체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지재권의 무효 소송, 그리고 지재권 침해 소송으로 구분된다. 기타 특허권의 포기, 정정, 실시권 등에 관한 분쟁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Patent Court)에 제기해야 하고<sup>12)</sup>, 위 특허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허가를 얻어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특허지방법원(PCC)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허



<영국의 특허소송 체계>

무효와 침해소송은 특허법원(PC)과 특허지방법원(PCC)의 경합 관할이다.

디자인권과 관련된 분쟁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디자인권의 존부, 존속기간 및 디자인창작자에 관한 분쟁(“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246조<sup>13)</sup>)인데, 이에 관한 특허청장의 결정

4) “Senior Courts Act” 제5조 : Divisions of High Court.  
 (1) There shall be three divisions of the High Court namely—  
 (a) the Chancery Division, consisting of [the Chancellor of the High Court, who shall be president thereof,] the Vice-Chancellor, who shall be vice-president thereof, and such of the puisne judges as are for the time being attached thereto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b) the Queen’s Bench Division, consisting of the Lord Chief Justice, [the President of the Queen’s Bench Division], [the vice-president of the Queen’s Bench Division] and such of the puisne judges as are for the time being so attached thereto; and  
 (c) the Family Division, consisting of the President of the Family Division and such of the puisne judges as are for the time being so attached thereto.  
 5) “Senior Courts Act” 제6조 : The Patents, Admiralty and Commercial Courts.  
 (1) There shall be  
 (a) as part of the Chancery Division, a Patents Court; and  
 (b) as parts of the Queen’s Bench Division, an Admiralty Court and a Commercial Court.  
 6) “Senior Courts Act” 제3조 : Divisions of Court of Appeal

(1) There shall be two divisions of the Court of Appeal, namely the criminal division and the civil division.  
 7)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제23조 : The Supreme Court  
 This section has no associated Explanatory Notes  
 (1) There is to be a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2) The Court consists of 12 judges appointed by Her Majesty by letters patent.  
 (3) Her Majesty may from time to time by Order in Council amend subsection (2) so as to increase or further increase the number of judges of the Court.  
 8) “Patents County Court (Designation and Jurisdiction) Order 1990” and “Patents County Court (Designation and Jurisdiction) Order 1994”  
 9) County Court Jurisdiction Order 1991 article 2(7A)  
 (7A) A patents county court and the county courts listed in paragraph (7B) shall have jurisdiction under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Trade Marks Act 1994 (1) (a) sections 15, 16, 19, 23(5), 25(4)(b), 30, 31, 46, 47, 64, 73 and 74;  
 (b) paragraph 12 of Schedule 1; and  
 (c) paragraph 14 of Schedule 2,  
 to include jurisdiction to hear and determine any claims or matters ancillary to, or arising from proceedings brought under such provisions.  
 10) “The Community Trade Marks Regulations 2006 regulation 12”, designation of Community trade mark courts,  
 12-(1) For the purposes of Article 91 of the 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the following courts are designated as Community trade mark courts—  
 (a) in England and Wales (i) the High Court; (ii) any county court designated as a patents county court under section 287(1) of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1); and (iii) the county courts listed in paragraph (2);  
 11) “The Patents County Court (Financial Limits) Order 2011” 제2조  
 This section has no associated Explanatory Memorandum  
 2-(1) in relation to all proceedings within the special jurisdiction of a patents county court and in which a claim is made for damages or an account of profits, the amount or value of that claim shall not exceed £ 500,000.  
 (2) In determining the amount or value of a claim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a claim for  
 (a) interest, other than interest payable under an agreement, or  
 (b) costs, shall be disregarded.  
 12) “Senior Courts Act” 제62조 : Business of Patents, Admiralty and Commercial Courts.  
 (1) The Patents Court shall take such proceedings relating to patents as are within the jurisdiction conferred on it by the MIPatents Act 1977, and such other proceedings relating to patents or other matters as may be prescribed.  
 13)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246조  
 Jurisdiction to decide matters relating to design right  
 (1) A party to a dispute as to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comptroller for his decision—  
 (a) the subsistence of design right,  
 (b) the term of design right, or  
 (c) the identity of the person in whom design right first vested;  
 and the comptroller’s decision on the reference is binding on the parties to the dispute.

에 대한 불복의 소는 고등법원(Hight Court)에 제기해야 한다.

한편,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247조<sup>14)</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시권의 기간 해결에 대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소는 등록디자인 항소심판소(Registered Design Appeal Tribunal)에 제기해야 한다<sup>15)</sup>.

상표권의 경우 특허청의 결정, 침해소송은 모두 고등법원 내의 형평법부가 관할하며, 상소심은 항소법원 및 최고법원이 심판한다.

거절불복소송은 특허청 결정이 있은 후 28일<sup>16)</sup> 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에 관해 등록디자인 항소심판소(Registered Design Appeal Tribunal)에 제기하는 소송은 절차에 관한 사항은 14일 이내에, 실체에 관한 사항은 6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sup>17)</sup>



#### 4. 특허 무효심판 및 무효소송

특허 무효란 특허권이 설정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특허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인이 특

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sup>18)</sup>을 제기하여야 하고, 별도의 특허무효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특허무효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영국 특허법 제72조<sup>19)</sup>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누구든지 특허의 무효를 특허법원, 특허지방법원 또는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다. 특허 무효소송은 주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반소로서 제기된다. 이하 영국에서의 특허 무효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 가) 영국 법원에서의 특허 무효소송

특허 무효소송은 특허법원 및 특허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특허가 무효되어야 하는 근거는 소장(statement of case)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증거공개, 사건관리회의 등과 같은 소송 절차는 특허침해소송 절차에서와 같다. 특허권자는 특허 무효소송이 제기된 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허 명세서를 보정<sup>20)</sup>할 수 있다. 특허 무효소송에 대한 항소는 항소법원에 제기하며, 특허 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영국 특허청에서의 특허 무효심판

특허청에서의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청에 특허 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특허가 무효되어야 하는 근거가 기재된 진술서는 특허 무효심판 청구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되는 서류는 사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된 사본은 특허권자에게 송부된다. 특허권자가 특허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다루고 싶은 경우에는, 특허 무효심판 청구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통상 6주 이내에 반박서(counter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 무효심판 청구인은 특허가 무효되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특허권자로부터 반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주 내에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특허권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증거의 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청구인은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때 특허청장은 추후 특허청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법원의 허락 하에 법원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장은 특허 무효심판 청구의 취하를 불허하고,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특허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되

는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허 무효심판이 특허청에 계류 중인 경우에 법원에 별도의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특허청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특허청에서의 특허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며, 특허법원에서의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법원에 제기한다.

### 5. 불침해 선언(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 청구

특허권이 없는 제3자가 물건을 제조하는 때는 다른 사람의 특허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받기 위한 제도가 영국의 특허 불침해 선언 청구제도이다. 영국 특허법 제71조<sup>21)</sup>에 의하면, 자신의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술의 실시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언을 해줄 것을 법원 또는 특허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자신의 기술을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특허권자에게 비침해 선언의 확인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②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불침해

선언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불침해 선언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실시는 영국 내에서의 실시에만 한정되며, 실시하고자 하는 기술을 나타내는 샘플이나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청장이 하는 불침해 선언(declaration)은 법원에 의한 선언(declaration)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하게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다.(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한 우리나라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고 단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sup>22)</sup> 효과가 있을 뿐이다.

다음호에 계속  
2011. 9 |

14)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247조 Application to settle terms of licence of right.  
15)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제249조: Appeals as to terms of licence of right(1)An appeal lies from any decision of the comptroller under section 247 or 248 (settlement of terms of licence of right) to the Appe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section 28 of the Registered Designs Act 1949.  
16) Part 52 of the "Civil Procedure Rules"  
17) Registered Designs Appeal Tribunal Rules 1950  
1.- (2)The notice of appeal shall be filed (a) in the case of a decision on a matter of procedure, within 14 days after the date of the decision; and (b) in any other case, within six weeks after the date of the decision.  
18)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

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9) "Patents Act 1977" 제72조 : Power to revoke patents on application

(1)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Act,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may on the application of any person by order revoke a patent for an invention on (but only on)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that is to say:

(a)the invention is not a patentable invention;

(b)that the patent was granted to a person who was not entitled to be granted that patent;

(c)the specification of the patent does not disclose the invention clearly enough and completely enough for it to be performed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d)the matter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of the patent extends beyond that disclosed in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as filed, or, if the patent was granted on a new application filed under section 8(3), 12 or 37(4) above or as mentioned in section 15(4) above, in the earlier application, as filed;

20) "Patents Act 1977" 제75조 : Amendment of patent in infringement or revocation proceedings

75- (1) In any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in which the validity of a patent may be put in issue the court or, as the case may be, the comptroller may, subject to section 76 below, allow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to amend the specification of the patent in such manner, and subject to such terms as to advertising the proposed amendment and as to costs, expenses or otherwise, as the court or comptroller thinks fit.

(2) A person may give notice to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of his opposition to an amendment proposed by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under this section, and if he does so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shall notify the proprietor and consider the opposition in deciding whether the amendment or any amendment should be allowed.

(3) An amendment of a specification of a patent under this section shall have effect and be deemed always to have had effect from the grant of the patent.

(4) Where an application for an order under this section is made to the court, the applicant shall notify the comptroller, who shall be entitled to appear and be heard and shall appear if so directed by the court.

21) "Patents Act 1997" 제71조 : Declaration or declarator as to non-infringement

(1)Without prejudice to the court's jurisdiction to make a declaration or declarator apart from this section, a declaration or declarator that an act does not, or a proposed act would not,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a patent may be made by the court or the comptroller in proceedings between the person doing or proposing to do the act and the proprietor of the patent, notwithstanding that no assertion to the contrary has been made by the proprietor, if it is shown-

(a)that that person has applied in writing to the proprietor for a written acknowledgment to the effect of the declaration or declarator claimed, and has furnished him with full particulars in writing of the act in question; and (b)that the proprietor has refused or failed to give any such acknowledgment.

(2) Subject to section 72(5) below, a declaration made by the comptroller under this section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declaration or declarator by the court.

22)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